

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손윤목

#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6년 11월 2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개정이유

- 행정재산(충북스포츠훈련관) 용도폐지에 따른 조례 정비
- 상위법령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)에 맞게 불합리한 조항 정비

## 3. 주요내용

- 충북스포츠훈련관의 명칭, 기능 조항 삭제 (안 제2조, 제3조)
- 수탁자와 행정재산 위탁운영 갱신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해야 하는 조항 삽입 (안 제4조)

#### 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인 충북스포츠훈련관(평창)의 용도폐지에 따른 조례 정비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탁운영 갱신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해야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